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49,804,266 | 10,494,128 |
| 일반회계 | 325,425,174 | 9,762,755 |
| 특별회계 | 24,379,092 | 731,373 |
| 기타특별회계 | 24,379,092 | 731,373 |
|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| 2,349,961 | 70,499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62,864 | 13,886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6,741,184 | 202,236 |
|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| 4,576,443 | 137,29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,264,971 | 37,949 |
|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| 2,702,495 | 81,075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78,963 | 2,369 |
| 섬진강댐특별회계 | 5,126,211 | 153,786 |
|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| 1,076,000 | 32,280 |

제 2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8,1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770,281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